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2. 19(금) 10:00

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 
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60호
- 나. 제 출 자 : 김경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2. 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2. 8.

## 2. 제안이유

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추진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기본이념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(안 제6조~제11조)
- 라.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(안 제12조~제19조)
- 마.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등 (안 제20조~제22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  - 2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 및 제21조
  - 3)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2. 8. ~ 2. 15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2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
  -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과 용어를 정의하고,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
  -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과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추진 및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는
  -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# 다. 검토의견

-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%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, 2018년에 14%를 넘는 고령사회, 그리고 2026년에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우리 구도 2019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7,196명으로 전체 인구 232,810명 중 약 16%를 차지하고 있음.

- 고령친화도시(Age-Friendly Cities)란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, 참여,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활동적인 고령화(active ageing)를 도모하는 곳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의미함.
  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목적하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토대가 되는 금천구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함으로써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선도하고, 모든 연령층에 걸쳐 불편함이 없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, 조례 제정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노인복지법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**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-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